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93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최형두・김예지・최수진

김종양 · 김태호 · 안철수

이종욱 · 김장겸 · 배준영

엄태영 • 박충권 • 윤영석

권영진 · 서지영 · 강선영

박성민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을 넓혀가는 추세임.

최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인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바,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 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목소 리가 있음.

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제2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하 되, 가입자,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 다 만,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 입하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7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가첨단전략기술과 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

	에 대한 투융자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